##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095

발의연월일: 2025. 4. 24.

발 의 자:고민정·한민수·김문수

장철민 • 박정현 • 김동아

문정복 • 김영호 • 김종민

전종덕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31조제6항은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

교과서는 교육제도의 일환으로 교육제도 법률주의 원칙을 따라야하나 대통령령으로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법률로 직접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한편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 졸속 도입을 위해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과서 정의에 포함시키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2조제2호를 개정함. 그런데 국회와 학계에서이 개정은 헌법이 규정한 교육제도 법률주의에 위반되어 위헌이고 무효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됨.

또,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해선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문해력 하락

및 스마트 기기 중독 등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음.

이에 교과용 도서에 관한 정의 및 범위 등 최소한의 사항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여 교육제도 법률주의를 구현하고 교육 자료에 관한 규정 을 신설하여 교육부장관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협의해 기준을 정 하는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자료로 하고자 함(안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29조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 제목 "(교과용 도서의 사용)"을 "(교과용 도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1항) 중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범위·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을 "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으로 한다.

- ① "교과용 도서"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 자료 중 국가가 저 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 것을 말한 다.
- 1. 교과서: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하는 학생용의 도
- 2. 지도서: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하는 교사용의 도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교과용 도서의 범위에 교과용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 영상 또는 전자적 매체에 실어 학생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발행한 전자책(이하 "전자책"이라 한다)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제29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책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교과용 도서의 경우 학교의 장이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항에 따른 전자책을 사용함으로써 교 과서 또는 지도서의 사용을 대신할 수 있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교육 자료) ① "교육 자료"란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저작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저작물
-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을 활용 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 3. 그 밖에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것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교육 자료로서 교육부장관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 교육 자료를 선정하려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1조제1항 중 "제29조제1항"을 "제29조제3항"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과용 도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 중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교과용 도서가 아닌 것으로 본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제2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 자료로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점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전단 중 "도서(디지털교과서 등 전자저작물을 포함한다)"를 "도서"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 ②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2항 중 "교재 및"을 "교육"으로 한다.
- ③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교육용"을 각각 "교육"으로 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 개 정 안               |
|---------------------|--------|---------------------|
| 제29조(교과용 도서의        | 사용) <신 | 제29조(교과용 도서) ① "교과용 |
| <u>설&gt;</u>        |        | 도서"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
|                     |        | 교육 자료 중 국가가 저작권을    |
|                     |        |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    |
|                     |        | 정하거나 인정한 것을 말한다.    |
|                     |        | 1. 교과서: 학교에서 학생들의   |
|                     |        | 교육을 위하여 사용하는 학생     |
|                     |        | 용의 도서               |
|                     |        | 2. 지도서: 학교에서 학생들의   |
|                     |        | 교육을 위하여 사용하는 교사     |
|                     |        | <u>용의 도서</u>        |
| <u> &lt;신 설&gt;</u>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
|                     |        |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
|                     |        | 우에는 교과용 도서의 범위에     |
|                     |        | 교과용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    |
|                     |        | 반, 영상 또는 전자적 매체에 실  |
|                     |        | 어 학생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    |
|                     |        | 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읽    |
|                     |        | 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발행   |
|                     |        | 한 전자책(이하 "전자책"이라    |
|                     |        | 한다)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
|                     |        | 제29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   |
|                     |        | 는 경우에는 전자책으로 보지     |

① 학교에서는 <u>국가가 저작권을</u>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 <u>정하거나 인정한</u>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u><단서 신설></u>

② 교과용 도서의 <u>범위·저작·</u> <u>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u> 및 가격 사정(査定)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신 설>

| <u>아니한다.</u>           |
|------------------------|
| ③ 제1항에 따른              |
|                        |
|                        |
| <u>다만, 교육부장</u>        |
| 관이 지정하는 교과용 도서의        |
| 경우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       |
| 회의 심의를 거쳐 제2항에 따른      |
| 전자책을 사용함으로써 교과서        |
| 또는 지도서의 사용을 대신할        |
| <u>수 있다.</u>           |
| <u>④</u> <u>저작·검정·</u> |
| <u>인정·발행·공급·선정</u>     |
|                        |
|                        |

제29조의2(교육 자료) ① "교육 자료" 한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저작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저작물
-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제61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학교교육제도를 포함 한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6조제1항 · 제29조제1항 ·제31조 ·제39조 ·제42조 및 제46조를 한시적 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 다.

② (생략)

감이 정하는 것

3. 그 밖에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제2호에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교육

② (현행과 같음)